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. 5. 2 선고 2024가단101868 판결 [건물명도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

담당변호사 공성준, 김용욱, 박재현, 유재준, 주대경, 최원진, 최정

훈, 홍정훈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1. 5. 6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 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- 판사 강세빈
- 별지